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 16호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3.

임실군의회의장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됨에 따라,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변경(별표 1)

- 연13,200,000원(월1,100,000원)→연18,000,000원(월1,500,000원)

나. 인용 조문, 맞춤법,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 등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4. 3 .13. ~ 2024. 3 .18. (5일간)

라. 불 입 :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등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의원”을 “임실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한다)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임실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의원이”로, “여행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를 “출장 또는 여행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을 “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여행을 할”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한다.

제9조 중 “규정된”을 “규정된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으로, “의회 지방공무원의 예”를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1. 의정활동비 : 연18,000,000원(월1,500,000원)

[별표 2]

임실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7조 관련)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 -----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① <u>지방의원</u> 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임실군의회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의 지급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① <u>임실군의회의 의원</u> (이하 “의원”이라 한다)--- ----- ----- ----- 한다) 공무원----- --. ②제1항에 따른 ----- ----- ----- ----- --.
제4조(여비의 지급) 임실군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여	제4조(여비의 지급) <u>의원이</u> ---- ----- ----- ----- ----- ----- ----- 출장 또는 여행하는

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회기 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생략)

제7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표 2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의회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여행을 할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여비지급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

제4조-----

-----.

-----.

제9조(준용) ----- 규정된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 --
-----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부 칙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임실군의정비심의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4년~'26년 적용 임실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4년~'26년 적용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에 대한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구 분	2024 결정액 (원)		비고
	年	月	
의 정 활 동 비	18,000,000	1,500,000	

붙임 2024년~2026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결서 1부. 끝.

임실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임실군수, 임실군의회의장

주무관 신 동 창

기획정책팀장 홍민호

위원장 이강민

협조자

시행 임실의정심의위-1 (2024.02.23.) 접수

우 566-700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 http://www.imsil.go.kr/

전화 (063)640-2024 /전송 (063)640-2059 /

『2024 ~ 2026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의 결 서

□ 의정활동비 : 年18,000,000원(月1,500,000원)

위와 같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결정함

2024. 2. 23.
임실군의정비심의회



위원장 이 강 년

이강년

황 천 우

황천우

문 홍 철

김 성 두

김성두

박 세 일

박세일

이 강 국

이강국

하 재 국

하재국

강 준 희

강준희

정 현 옥

정현옥

황 정 자